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대학 등록금 운영 지침 제4조(휴학 및 복학생의 등록금)</p> <p>제4조(휴학 및 복학생의 등록금)</p> <p>① 복학생의 등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자가 일반휴학을 할 경우 가. 등록학기 수업일수 1/2(8주)이후 3/4(12주) 이전 휴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의 1/2을 납입하여야 한다. 나. 등록학기 수업일수 3/4(12주)이후 휴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. 다. 등록학기 수업일수 1/2(8주)이전 휴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.</p> <p>2.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이 군입대 휴학을 할 경우 가. 등록학기 수업일수 3/4이후 휴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. 나. 등록학기 수업일수 3/4이전 휴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.</p> <p>3.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이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변경한 경우 군휴학으로 인정한다.</p> <p>② 등록 후 해당학기 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질병휴학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학기로 대체된다.</p>	<p>대학 등록금 운영 지침 제4조(휴학 및 복학생의 등록금)</p> <p>제4조(휴학 및 복학생의 등록금)</p> <p>① 복학생의 등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자가 일반휴학을 할 경우 가. 등록학기 수업일수 1/2(8주)의 다음날부터 3/4(12주)에 해당하는 날까지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의 1/2을 납입하여야 한다. 나. 등록학기 수업일수 3/4(12주)의 다음날부터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. 다. 등록학기 수업일수 1/2(8주)에 해당하는 날까지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.</p> <p>2.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이 군입대 휴학을 할 경우 가. 등록학기 수업일수 3/4(12주)의 다음날부터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. 나. 등록학기 수업일수 3/4(12주)에 해당하는 날까지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.</p> <p>3.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이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변경한 경우 군휴학으로 인정한다.</p> <p>② 등록 후 해당학기 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질병휴학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학기로 대체된다.</p>